



90년도의 낙농계를 돌아보고

김 남 용
(한국낙농육우협회 전무이사)

1. 서언

1990년 1년간은 우리나라 낙농사의 축소판과 같은 한 해였다. 우유소비의 부진으로 우유재고가 사상 최고에 달하게 되므로서 야기되었던 수유(受乳)거부, 제한수유, 원유대(原乳代)의 일부 어음 및 분유를 위시한 유제품 지급 등 그 결과 1년간 근10%에 달하는 낙농가들이 낙농업에서 손을 떼었고 젖소 처녀우 값이 고기소 값 보다도 헐하여 많은 처녀우들이 비육도 살되었고, U.R 농산물협상물결이 몰아닥쳐 어느 곳 어느 농민이고 UR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하반기 들어서면서는 우유소비증가에 원유생산이 뒤따르지 못하여 원유부족현상이 일기 시작하여 재고분유가 소진되고도 부족현상이 계속되어 유업체간 원유쟁탈전이 치열해져 낙농가들을 어리둥절케하고 있다. 지난 일년간은 우리나라 낙농사의 축소판과도 같은 한 해였다.

2. 낙농진흥법개정 입법예고

낙농진흥법은 1967년에 제정된 낙농진흥을 위한 법이다. 이 낙농진흥법 제정시에도 많은 산고(産苦)를 치렀다. 당초에는 의욕적인 법으로 초안이 되었으나 제정과정에서 분유를 수입하여 소분하여 국내에 판매하여 온 소분업자들의 농간에 의하여 핵심부문이 난도질 당하여 알맹이

없는 법으로 제정공포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이 낙농진흥법개정을 위하여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촌 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개정초안을 만들도록 하였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낙농에 관계되는 기관의 인사들로하여 협의회를 구성 수차례 걸친 협의회를 거쳤다. 이 협의회 과정에서 협의된 사항이 다음 협의회에서 뒤집는 등 이해가 상반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농림수산부에서 여론 수렴과정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어려움이 많았다. 이 낙농진흥법개정의 진의를 오도하는 무리가 있어 많은 진통이 있었다. 결국은 의견일치를 보아 입법예고가 되고 최종적으로 정부부처간의 협의만이 남아 있다. 이 협의과정중에 보사부, 경제기획원 등에서 몇개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금년 정기국회에서는 개정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수입개방압력이 강하게 밀어닥치고 있는 차제에 속히 개정되어 낙농의 현안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3. 우유의 잉여, 우유의 부족현상

89년 하반기부터 재고로 쌓이기 시작한 유제품은 금년들어서 최고 2만2천여톤의 재고로 누증되었고 정부를 비롯하여 유업체들도 우유는 앞으로 계속 잉여되리라는 판단하에 정부에서 젖소도태를 유도하였고 유업체에서는 과거 긴밀하였던

낙농가들을 다시는 보지 않을 듯이 안면을 바꾸어 수유거부, 원유대의 일부를 유제품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젖소도태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낙농가들도 정부와 유업체에서 낙농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자 전망이 없다고 판단 기회만 주어지면 마련없이 폐업을 하곤하여 1년사이 3천3백여호의 낙농가가 낙농을 포기하였고 매년 증가 일로에 있던 젖소까지 1년사이 1만6천두가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 이르자 젖소가격은 고기소가격보다 밑에서 맴돌게 되어 젖소 육성우들이 비육되어 고기용으로 많은 두 수가 도살되곤하였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중부지방에 가뭄이 계속되어 우유소비가 대폭증가 되었고, 많은 생필 품값은 계속 인상되었으나 우유값은 1년반 이상 변동이 없었으므로 상대적으로 다른 물가에 비하우 싸게 느껴져 우유소비가 증대되었다. 우유소비는 증대되었으나 우유생산량은 젖소 도태로 인하여 우유생산량은 한정돼 있는데다 가을 가뭄으로 목초와 사료작물이 흉작을 이루어 우유생산량을 더욱 감소케하였다. 우유가 부족하다고 하니 우유를 원료로하는 업체들이 사재기에 혈안이 되어 부족현상은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업체들은 원유확보에 악감힘을 쓰고 있고 낙농가들은 유업체에서 제한수유, 유대의 일부 제품으로 지급 등의 과거의 쓰라린 경험으로 인하여 다른 유업체로 납유선을 바꾸는 등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원유가 낙농사상 최고의 임여를 나타낸 것도 90년도요, 원유가 최고로 부족을 이루고 있는 것도 90년도이다. 임여와 부족! 수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원유의 수급이고 보니 희비가 극과 극에 달하게 된다. 원유는 영원히 임여되리라는 판단이 원유 부족현상을 자초한 것이다.

4. 코코아조정품 수입증가와 불매운동

분유성분이 85% 이상 함유된 코코아 조정품의 수입이 매년 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89년에 3,400여톤이나 수입되어 이 코코아조정품으로 인하여 국내산, 분유의 재고가 누증되고 있어 이 수입

을 그대로 방치하여서는 안되겠다고 판단, 유가공 협회에서는 산업피해구제신청을 하였고 낙농육우 협회에서는 많은 량을 수입하고 있는 제과업체의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코코아조정품은 85% 이상의 분유가 함유되어 있으면서도 수입자유화품목에 관세가 10%이므로 코코아를 원료로 하지 않으면서도 분유를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고 있어 그 수입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국내 낙농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클 것이다. 관세를 인상조정하여 줄 것을 전의하였으나 묵살되고, 물량은 계속 수입되고 할 수 없어 최후 수단으로 롯데제과 계열사 제품과 해태제과 계열사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다행이 지역 낙농가들이 동참하여 양사에서 협회와 협의를 하지 않고서는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다. 우리 농민들이 취할 수 있는 최종방안은 불매운동밖에 없었다. 85% 이상 분유가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수입을 자유화한 것도 문제고 관세를 10%로 책정한 것은 더욱 문제다. 관세인상요청도 할흥차사다. 당국에서는 의도적으로 농민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90년 9월 현재 코코아조정품의 수입은 4천여톤에 이르고 있다.

5. UR농산물협상

지난 해는 우리나라가 BOP를 출입하였고 또 협의결과 97년까지는 모든 교역물품이 자유화하여야 된다고 하였고 97년까지의 자유화일정을 GATT에 제시하여야 된다고 하여 떠들썩하였다. 그러면서도 97년까지 전 농산물도 수입을 개방하여야 한다는데 실감을 느끼지 못하였다. 설마 농산물을 자유화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금년들어서면서 UR농산물협상에 관한 구체안들이 나오면서 국내 외적으로 여론이 비등하여졌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산물수입에 대응한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UR농산물협상에 관한 관심을 쏟기 시작하였다. 농산물협상을 위하여 대표들이 제네바에

들락날락하고 있고 모든 언론 매체에서는 UR 협상에 관한 기사가 그치지 않고 계속 보도되곤 하고 있다. 세미나, 심포지움, 설명회, 공청회 등 이 UR협상관계의 국내의 모임도 계속되고 있다. 두메산골에 있는 농민들까지 UR농산물협상에 관하여 자세히는 모르되 UR은 우리 농업에 타격을 준다는 것은 알고 있을 정도가 되었다. 우리 낙농계에서도 UR협상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땅의 낙농을 지켜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낙농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우선 국내에서 낙농을 지키겠다는 심증을 얻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자료를 취합하여 여론을 조성키로 하였다. 몇명의 실무진들의 노력의 결과 “UR 농산물 협상에 대한 낙농산업의 대응 방안”이란 전의서를 만들어 요로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다행이 이 전의서가 시기적절히 만들어져 우리나라 당국에 낙농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농림수산부에서 정한 NTC(Non-Trade Concerns: 비교역적 관심사) 품목 9개종목에 “우유·유제품”이 포함되었고 농림수산부의 공청회의 여론에 의하여 NTC품목을 15개로 확정하는데도 “우유와 유제품”이 포함되게 되었다. 물론 GATT에서 이 15개품목을 NTC품목으로 관찰시킬 것인가는 것은 불문에 부치고 우리나라의 낙농의 존망은 우리나라 정부의 의지에 좌우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우유와 유제품이 NTC 품목으로 선정된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낙농관련 4개 단체들이 입을 모아 하나의 작품을 냈다는 것은 크게 평가할만한 사실이다.

6. 낙농계에 말이 많았던 한 해였다.

낙농계의 모든 문제점들이 노출된 한해였다. 첫째 앞에서도 열거하였지만 낙농진흥법개정문제로 말이 많았던 해였다. 내용도 잘 모르면서 각자의 주장을 내세워 낙농현안문제해결에 힘을 쏟지 못하였다. 낙농진흥법개정에 모든 힘을 쏟는 사이 우리나라 낙농계에는 여러가지 일들이 터져

나왔다.

둘째 우유의 잉여다. 전년도 원유값인상 후 소비둔화로 우유의 잉여가 계속되어 금년들어서면서 분유재고가 사상 최고에 이르게 되었다. 지난 해의 우유소비둔화가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하여 우유잉여방지를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들을 써 왔다. 분유의 재고로 각 유업체에서는 분유저장창고임대에 혈안이 되기도 하였으며 서로 경쟁적으로 분유 덤핑판매로 시장의 유제품가격은 들숙날숙 가격형성이 되지 못하였다.

셋째 제한 수유(制限受乳)로 낙농가에게 어려움을 주었다. 우유가 잉여되자 유업체들은 신규낙농가의 우유는 수유거부를 하였고 기존 낙농가들이 생산한 우유도 전년도 수준에 한하여 수유하고 그 이상은 수유를 거부하였고 수유를 하여도 위탁가공형식으로 가공하여 분유로 주는 방법을 취하기도 하였다. 분유의 재고로 자금사정이 나빠지고 또 재고분유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유대의 일부를 어음으로 주기도 하였고 또 유제품으로 주기도 하였다. 낙농가들과 협의하여 제품으로 준 곳에서는 말썽이 없었으나 일방적으로 유제품으로 지급한 곳에서는 말썽도 있었고 현재 우유가 부족하게 되자 고통을 주었던 낙농가들이 타 유업체로 납유처를 옮기고 있다.

넷째 젖소시세가 쇠고기값에 준하였다. 젖소가 젖소값으로 거래가 되지 못하고 고기값으로 거래가 되었다. 그러므로 살찐암소가 고기소로 많이 도태되었으며 처녀우들이 비육되어 고기소로 도살되곤 하였다. 젖소처녀우(1년된것) 값이 한우 3~4개월령 송아지값 보다도 훨하였다. 그러므로 비육우를 팔고는 비육을 위하여 젖소처녀우를 구입 비육하여 처분하곤 하였다. 한우 송아지를 구입 비육하자면 최소한 1년 이상을 길러야 하는데 처녀소는 6개월 이내에 비육우로 출하할 수 있으므로 희전 수가 빠르고 또 마리당 수익도 처녀우 비육이 유리하였다. 처녀우도태가 많았던 관계로 가을 들어서면서 원유가 부족하게 된 것이다. 젖소 초유폐기 암수의 가격차이

가 마리당 3십만원까지 되었다. 즉 암소는 60만원
수소는 90~95만원하였다.

다섯째 인건비 상승이 두드러졌다. 목장관리인(목부)의 인건비가 연간 2~3번에 50%선까지
인상되었다. 그러면서도 관리인을 구하기가 어렵다.
관리인들의 대부분이 1개 목장에 수 개월정도
도 있지 못하고 이동을 하고 있으며 그질도 전과
같지 못하고 일의 질이 떨어진다. 즉 목장을 위하여
그리고 소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루를 보내는 그런 식이다. 그러므로
자력으로 목장을 경영치 못하고 관리인을 두고
경영하는 많은 목장이 폐업되었으며 또 현재도
불실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 1년간 3천3백여 목장
이 폐업을 한 것도 관리인관계로 폐업을 한 목장
이 대부분이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하
여져 대단위 목장 그리고 자력으로 하는 곳을
제하고 소규모 목장은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여섯째 많은 유제품들이 정식 또는 비공식으로
수입되어 국내산 유제품시장을 문란케 하고 있다.
앞에서도 논의 하였지만 분유성분이 85%
이상 함유된 코코아조정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제과제과 및 식품업계에서는 국내산 분유를 이용
할려들지 않고 이 코코아조정품을 이용하기에
이르렀으며 시중 외국상품판매점에는 어느 곳을
가나 외산 버터와 치즈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외산 버터와 치즈는 부정품으
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버터와 치즈의
수입은 호텔용에 한하여 수입되고 있으며 그
용도는 호텔용으로 국한시키고 있어 시중에 유통
될 수 없도록 되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미8군 PX에서 유출되는 것이거나 밀수되는 것들
이라고 본다. 시중에서 거래될 수 없는 유제품의
많은량이 유통되고 있고 이것들이 국내산 유제품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의 결여
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일곱째 기타 현안문제 등이다.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되는
듯 하다가 부가가치세를 정수하여 농발기금화한

다는 발상으로 중단된 상태다. 금년에도 약 3%
정도로 배합사료값이 인상되었다. 만약에 부가가
치세의 영세율이 적용되었다면 배합사료값이
오히려 인하되었을 것인데 인상되어 양축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었으며 91년도부터 대두막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관세를 현재의 3%를 20
~35%로 인상조정을 양축가들도 모르는 사이에
추진중에 있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되어있는 한국 마사회를
체육부로 이관을 추진중에 있다. 마사회의 이익금
이 축산진흥기금에 적립하여 축산진흥에 사용되
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행정이
그렇듯이 최고위층에서 결정하고 이 결정사항을
합리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농림수산부
관계단체들이 반발을 하니 농림수산부계통에서
손이 미치지 못하는 정부조직법중 부칙을 개정하
여 합리화하는 방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즉 마사회법을 개정하여야 하나 마사회법은
90년 8월1일부로 개정공포하였으므로 개정한지
2개월여밖에 안되는 데 개정한다는 여론도 있고
농수산의원들의 반발로 법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편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힘센자
가 약자를 잡아먹는 원시적인 원리가 작용한
것이다. 제5공화국시에는 이런 방식에 의하여
축산물가공허가권이 보사부에서 도둑질 하여
갔으며 제6공화국에서는 마사회가 이 꼴을 당하
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농경과 농업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전 국토를 도시화할 수는 없는 것이
고 농촌을 지켜주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도시로 와서 빈민화되어도 좋다고 대를 이어온
농사를 짊어치우고 도시로 도시로 몰려 들고
있으니 이 어찌 농민만의 잘못이겠는가.

지난 1년간의 우리나라 낙농산업도 답답하기만
하다. 길 잊은 나그네 모양으로 낙농산업은 방황
만을 거듭하고 있다. 1년도 다 갔으니 신년에는
무엇인가 낙농계에도 희망이 있지 않은가. 그
미련을 가지고 또 낙농산업에 몸을 맡길뿐이다.